

[일련번호 : 100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지출증빙서류 작성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도별 세출예산을 편성·집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2조(지출의 절차)제4항에 따르면 ‘각 과장은 동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,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,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)에 의하면 “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83조 및 제8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다”고 되어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83조(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제2항에 따르면 “물품의 매입·수리·수선·그 밖의

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 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“고 되어 있다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일상경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검수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누락하거나 그 증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 (총 21건)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, 예산 지출시 지출증빙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
(주의)